#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4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홍성국

이수진 · 소병훈 · 박상혁

김정호 · 전혜숙 · 허 영

최혜영 • 진선미 • 김병욱

위성곤 · 강준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소속 종사자의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규율 대상에 빠져있어 보안관리 적용의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 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 고 있음.

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을 "종사하는 자 및 그 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 니한 정보로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부동산의 취득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공주택사업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제1항 중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 다.
- 제57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 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 자 및 그 자로부터 정보를 받 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기나 전득한 자는 일반인에게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부동산의 취득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서 공공주택사업 및 관련 업 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 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 의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
<u> 니한 정보</u>
<u>7년</u> <u>7천</u>
<u>만원 이 경우 징역과</u>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
는 추징한다.
③ (제2항과 같음)
제57조의3(벌칙)
1. (현행과 같음)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

## <u><신 설></u>

2. (생략)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3. (생략)

1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2. • 3. (현행과 같음)